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49
----------	------

2020년 4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4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가. 제안이유

- 현재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서남권(양천구, 구로구 등)의 주민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민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나, '20년 1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소음대책 지역(13.1km²)에서 인근지역(13.5km²)까지 확대됨에 따라
-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로구에 주민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며

- 공항소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업 개요

- 사업명: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 위탁기간: 2년 6개월('20년 7월~'22년 12월)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신규위탁)

□ 주요 위탁사무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민원서류 접수대행 및 상담
- 피해주민 소통 및 교육사업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조직담당관-4000, '20.3.2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20년 120백만원('21년 150백만원)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재효)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¹⁾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및 제6조>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1)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 서울시는 2020년 1월에 소음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 센터와 분소간의 업무분담 등 효율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된 구로구 지원사업의 방향 설정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양천구 주민지원센터를 필두로 총 2개 센터와 3개 분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기존의 양천구 주민지원센터는 현재 업무에 분소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고척동 주민지원센터는 지원범위가 고척동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주민민원 상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소음교육 업무로 한정함
- 분소는 피해주민 민원 상담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교육 홍보사업 및 간담회 개최는 총괄기관인 양천구 주민지원센터에서 수행하되 분소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분소는 구별로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구로동의 경우 주민 갈등 문제로 인해 별도의 분소를 설치함

<주민지원센터와 분소의 설치 지역, 지원내용 및 세부 사업>

구분	지 역	지원내용	세부사업
주민 지원 센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주민민원 상담, 서류 대행업무 - 소음측정 및 연구업무 - 지역주민 소음교육 및 홍보행사 업무 -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구로동) 분소 관리 총괄
	구로구 (고척동)		- 피해주민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 -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및 소음교육 업무
분소	강서구	분소 개설 및 운영	- 피해주민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 - 피해주민 간담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금천구		
	구로구 (구로동)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을 공항소음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등의 개요 부분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의 주민지원사업이 예산지원형 사무형 위탁²⁾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3. 위탁사무 내용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 5. 민간위탁기간 | 6. 수탁자 선정방식 |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2) 민간위탁의 유형은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과 수익창출형으로 구분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본 위탁사업은 2020년 2월에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3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운영 규정 및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사항을 단서 조건으로 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 바 있음
-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 따르면 고척동 주민지원 센터의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어긋나는 행위임.

<2020년 제2차 민간위탁 운용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심의사유
생활환경과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무/신규(공모)	2년6개월	적정	(권고) 운영 규정 및 향후 운영계획 마련 필요

□ 검토 의견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및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상 의회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시는 지역별로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설치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객관적인 설치 기준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49
----------	------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김포공항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서남권(양천,구로 등) 주민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나, '20. 1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소음대책지역 (13.1 km^2)에서 인근지역(13.5 km^2)까지 확대되었음

※ 소음대책지역 : 항공소음 75웨클 이상

소음대책 인근지역 : 항공소음 70웨클~75웨클 미만

나. 이에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로구에 주민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며

다. 공항소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0년 1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원사업 대상이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인근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민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 사업확대가 불가피함
- 구로구는 양천구 다음으로 소음피해가 큰 지역임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인 고척동에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항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사업
- 위탁기간 : 2년 6개월('20. 7월~'22. 12월)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사업비 : '20년 120백만원 ※ '21년 150백만원

다. 주요 위탁사무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민원서류 접수대행 및 상담
- 피해주민 소통·교육사업

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조직담당관-4000, '20.3.2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년 120백만원('21년 예산 150백만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 김효형 (☎ 2133-3723)

<붙임 1>

2020년 민간위탁사업 소요예산 산출근거

- 사 업 명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0. 07. 01. ~ 2020. 12. 31.(6개월)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① 인건비	기 본 급	26,697,642	22.2%	2명(7급 5호봉 기준 1명, 서울형 생활임금 1명)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2,123,86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휴일근로수당	1,699,091	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정액급식비	1,560,000	1.3%	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상 여 금	2,669,764	2.2%	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퇴직급여충당금	3,025,864	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사 회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2,625,456	2.2%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9,110	0.2%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보험료	3,542,594	2.9%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	384,889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료	381,258	0.3%	고용보험법 제6조
	소 계	44,816,617	37.2%		
	② 운영비	회 의 비	3,212,400	2.7%	자문회의 등
임 차 료		4,980,000	4.1%	주민지원센터 사무실	
전화통신비		633,600	0.5%	전화요금, 인터넷 등	
유 인 물 비		-	0.0%		
소 모 품 비		365,910	0.3%	복사용지 등	
수선유지비		1,348,000	1.1%	센터무인경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156,220	1.0%	전기료, 각종 보험 등	
기타운영비		7,029,095	5.8%	문구류, 컴퓨터 프로그램 구매(한글, MS) 등	
자산취득비		6,150,950	5.1%	복합기, 컴퓨터 등	
소 계		24,876,175	20.7%		
③ 환경개선비	외부 간판제작(LED)	3,751,000	3.1%		
	내부 인테리어	23,767,000	19.7%		
	냉난방기(18평형)	3,223,000	2.7%		
	사무실 보증금	20,000,000	16.6%		
	소 계	50,741,000	42.1%		
위 탁 비 총 계		120,433,792	100%		

2021년 민간위탁사업 소요예산 산출근거

- 사업명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12개월)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① 근로비	기 본 급	53,395,284	35.6%	2명(7급 5호봉 기준 1명, 서울형 생활임금 1명)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4,247,730	2.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휴일근로수당	3,398,183	2.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정액급식비	3,120,000	2.1%	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상 여 금	2,669,764	1.8%	공무원 수당규정 준용	
	퇴직급여충당금	5,569,247	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사 회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2,625,456	1.8%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9,110	0.2%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보험료	3,542,594	2.4%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	708,408	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료	701,725	0.5%	고용보험법 제6조
소 계	80,247,501	53.5%			
② 운영비	회 의 비	3,212,400	2.1%	자문회의 등	
	임 차 료	9,960,000	6.6%	주민지원센터 사무실	
	전화통신비	1,267,200	0.8%	전화요금, 인터넷 등	
	소 모 품 비	365,910	0.2%	복사용지 등	
	수선유지비	2,476,000	1.7%	센터무인경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162,420	1.4%	전기료, 각종 보험 등	
	기타운영비	10,281,215	6.9%	문구류 등 사무실운영비	
	소 계	29,725,145	29.8%		
③ 사업비	찾아가는 공항소음 민원서비스	9,000,000	6.0%		
	공항소음 아카데미	18,000,000	12.0%		
	홍보비(리플렛, 소식지)	13,000,000	8.7%		
	소 계	40,000,000	26.7%		
위 탁 비 총 계		149,972,646	100%		